

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30일
① 대상지역	주소	어촌계명
		어촌마을명
② 일반현황	인구(명)	
	가구 수(호)	
	②-1 어가 수(호)	
③ 사업대상 어가	() 년도 대상 어가 수	
	총 () 어가 [어촌계원 ()명, 비어촌계원 ()명] - 면허어업(어가), 허가어업(어가), 신고어업(어가)	

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이
의
의

운영위원회 주 소 :

(전화 :)

위원장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	어촌마을 발전계획서 1부
------	---------------

작성방법

- ① 란은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에 소재한 어촌마을의 주소, 어촌계명 등을 적습니다.
- ② 란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와 가구 수를 적고, ②-1 란에는 해당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 수를 적습니다.
- ③ 란은 ②-1 란의 어가 수 중에서 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어가 수를 적습니다.